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특례(준주거지역에서 최대 700%)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(안 제46조제12항 신설)

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%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07.20.~ 08.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6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(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 ① ~ ⑪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6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 <u>⑫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(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
<u>⑫</u> (생략)	<u>⑬</u> (현행 제12항과 같음)